

의안번호	2213454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5.10.17.
추 계 번호	25D5446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의 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7,560만원씩 총 3억 7,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안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9	9	9	9	9	—
	회의횟수	24	24	24	24	24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추가재정소요	75.6	75.6	75.6	75.6	75.6	3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	배달앱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2항)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5. 배달종사자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6. 입점업체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6조제2항¹⁾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은 분쟁조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9명 모두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배달앱 관련 사업자 간 분쟁조정 12회, 배달앱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 12회 등 연 2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1)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배달앱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5. 배달종사자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6. 입점업체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본 추계에서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참고하여 35만원(회의참석수당 20만원, 안전검토비 15만원)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분쟁조정위원회 인원(9명)에 회의횟수(연 24회)와 회의참석수당 단가(35만원)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7,560만원씩 총 3억 7,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안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9	9	9	9	9	—
	회의횟수	24	24	24	24	24	—
	회의참석수당	0.35	0.35	0.35	0.35	0.35	—
	추가재정소요	75.6	75.6	75.6	75.6	75.6	3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